

코로나-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

최근 관내 학원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학원 밀집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7월 6일

고 양 시



1. 처분내용

- 고양시 소재 학원(체육입시학원 포함, 교습소 제외) 종사자 등은 처분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1회(총 2회) 실시
- 검사기간 : (1차) 2021. 7. 6. ~ 7. 12. / (2차) 2021. 7. 13. ~ 7. 26.
- ※ 예방접종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제외
- 고양시 소재 학원장 및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처분기간 동안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종사자 명단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
-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미실시 학원 :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

2. 처분사유: 「코로나 19」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방역관리 추진

3. 처분기간: 2021. 7. 6.(화) ~ 2021. 7. 26.(월) 24:00 (3주간)

4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공고즉시 효력 발생

5. 검사장소: 관할 소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

※선별진료소: 덕양구보건소, 일산동구보건소, 일산서구보건소

※임시선별검사소: 화정역 4번 출구, 정발산역 1,2번 출구,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

6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3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의2제1항제1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2제3호(별칙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(별칙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0호(별칙)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,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0. 업무담당부서

- (학원)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
- (체육입시학원) 교육문화국 체육정책과